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안 제5조, 제6조)
-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세에 대한 납기 및 부과대상지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규정 등 필요 없는 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 현행 3장 2절 18개 조항의 법규체제를 9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규정,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기, 재산세의 종과대상지역, 납기 등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음.
- 현행 조례는 1998.5.1. 제정되어 그 동안 26차례 개정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잦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을 개정 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임. 주요 중복규정 사례를 보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법 제111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조례에 기재하였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신고의무, 비과세신청 등의 내용도 같은 경우임.
-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행정력 낭비,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만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충실한 입법사례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5 호
----------	---------

제출연월일 : 2016.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15.8월)함에 따라 우리구도 통일적·효율적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세 조례】 18개 조항 ⇒ 9개 조항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안 제5조, 제6조)

다.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세에 대한 납기 및 부과대상지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3.10 ~ 2016.3.30,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재산세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u>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u></p>	<p>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u>----- 제3조에 -----.</p>
<p>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u>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u></p>	<p>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u>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24></u></p> <p>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p>	<p>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다)〈개정 2014.04.24〉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개정 2014.04.24〉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 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04.24>

구 분 세 율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개정 2014.04.24>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1천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
1억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04.24>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04.24>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6천만원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4.04.24>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04.24>

제12조 (삭제)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면적을 증감한 경우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

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일부개정 2014.04.24>

제14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일부개정 2014.04.24>

제15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17조 (삭제)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삭제)